

개정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법률제정의 배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현행 교육법(법률 제4009호)의 전면적 개악이다. 첫째, 교육자치제 실시단위에서 시·군·자치구를 배제하고 특별시, 직할시, 도에 한정한 것. 둘째, 현행교육법부칙에서 최초의 교육감을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지방자치법개정 법률(법률 제4310호)부칙에 의한 시·도지사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감 선출을 내년부터 유보시킨 것들이 그 단적인 예이다.

교육에 대한 중앙의 통제구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현행 교육법조차도 본문상의 규정이 부칙상의 규정에 의해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이 지방의회 구성시까지 유예되어 왔던 점에서 일관된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한, 교육자치제는 실시될 수 없는 것이고, 적어도 지방의회의 구성이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교육법 개정당시에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법 본문상의 교육자치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의원선거법의 통과로 지자체가 실시됨에 따라, 교육법 부칙상 '지방의회 구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위원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자체 실시가 가시화된 90년 7월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교육자치법안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일부 내용의 수정을 거쳐 이번에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II. 법률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본질이 교육에 대한 중앙통제구조를 존속시키는 것이며 교육자치를 전면 부정하는데 있음은 이미 살펴본대로 이고, 이하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1) 법적제정의 문제

교육자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교육조례의 위상문제이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법령의 구조는 지자체와 교자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법령이 지방입법행위와 교육행정의 세계한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실성에 의한 폐해를 차지하고라도, 지방의회에서 제정될 조례의 영역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실무적 차원에서 기술적문제를 규정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 둘째, 교육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경우에도 현행 법령의 규정상 그것을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되게끔 위임하는 것(즉, 단체위임-일대 그 사무는 자치 사무로 됨)이 아니라, 거의

76%(3조 8천억)으로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자체수입도는 (9천억), 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은 6%(3천억)이다. 그러나, 정부로부터의 교부금과 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각각 교육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임의로 결정되며, 단지 교육위원회 자체수입만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교육위원회의 재정자립도는 18%에 불과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3)단체자치의 위축 지자체와 교자제는 공히 '단체자치'의 원리에 기초한다. 중앙정

용하는 규정과도 배치되는 일면을 노정시키고 있다. 5)교육행정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침해 교육행정의 독립성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파당적 이해의 편을 배제하고 교육행정의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교육행정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조례를 교육위원회가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교육자치법은 교육조례의 제정을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교육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에도 관련이 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해 거의 문외한일 수 밖에 없는 지방의회에 교육조례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교육자치법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III. 결론 교육자치법도 교육자치의 원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불철저할 뿐만 아니라 실현의 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장외요인이 온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자치의 실시단위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제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조례의 제정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단위학교의 교무회의 또는 교수협의회를 의결기구화하거나, 학부모 및 학생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국적 수준에서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사항 이외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하는 법령체계의 정비

'자치'로 포장된 '중앙통제'의 산물

정부 통제수단 강화로 '상명하복' 존속시켜 교육의 전문성 확보위한 재정자립 시급

대부분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처리토록 위임하는 것(즉, 기관위임-일대 그 사무는 위임사무로서 근본적으로는 국가사무임)이어서, 위임사무에 대해선 지방의회가 일체 관여할 수 없을 뿐더러,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제정한 규칙은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와 상치하더라도 효력을 갖게끔 되어있다.

셋째, 자치단체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기관장은 그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에 부칠 수 있고, 재의결되어 확정되더라도 다시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제소가 되는 즉시 확정된 조례안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게끔 되어있다. 중앙정부가 재의결요구권과 대법원 제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의 조례입법권은 심각한 침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2)재정상의 문제 자치행정의 실현은 재정기반이 확보되지 않는 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현재, 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의 기본재원은 문교예산의 일반회계로부터 배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이전되는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그리고 교육위원회 자체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90년 지방교육재정 예산규모를 보면, 문교예산으로부터의 재원이

부가 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사무를 처리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단체자치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시·군·자치구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수용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에 관한 해서는 시·도 단위에만 단체자치를 허용하고 있어서, 지자체와 교자제간의 형식적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일반행정에 관해서는 일정정도 지방분권을 인정해 주더라도, 교육행정만은 지방분권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도에 따른다.

또한 부교육감을 국가공무원가운데서 중앙정부가 임명토록하여 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4)주민자치의 위축

지자체와 교자제를 공통되는 또 하나의 원리는 '주민자치'의 원리이다. 자치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법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막고, 지방의회에서 간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

6)단위학교 민주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에서와 같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의 상명하복적 지휘, 감독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상호 협조적인 지도, 조인의 관계가 기본되어야 하며, 상급기관은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의 정비를 지원하느 데 그 기능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교무회의 또는 교수협의회로 하여금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학부모와 학생단체 또는 기타 유관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있어야 하고, 조례의 위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부금 배부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배정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야함과 아울러 문교예산과 자치단체예산 규모를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기타 관련 세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현선

(전교조 교원법규국)

국민 우롱하는 부패정권



전 만 환
(본보 편집장)

일련의 정치부패, 사회비리 사건을 접하는 국민들의 인식은 '역시나라'라는 실망감과 함께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가 지배적이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부, 여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지지는 거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아작은 전면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미미하지만 재야·생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집회와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신문지상이 아닌 생활주변에서의 정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수사사건을 서둘러 종결하고 지자체선거를 하수구로 흘려보내며 논란거리인 정치권의 논쟁으로만 치부해 버리고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나 '공명선거'니 떠들어대고 있다. 가혹할만한 기만책에 다름없다. 한 정권기의 대규모 비리사건을 이렇듯 손쉽게 넘기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관행처럼 당연시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를 측면지원하는 여론의 무마와 호도는 현재에도 계속된다. 연일 신문지상의 불을 정식하다라도 기사가 사라지면서 바로 여론도 수그러드는 기이한 현상을 정치의식이 낮아진, 국민성이 그렇다느니 하는 말들로 도메시징의 상품처럼 치부해 버리는 현실, 적당히 언론을 통한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실질적인 여론은 방해하는 교묘한 술책에서 정권의 본질적인 의도가 더욱 잘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먼저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대처로 대응하며 자신의 입지를 흔들리지 않게하려는 지배권력의 속성을 조금만 눈여겨봐도 알 수 있다.

민중의 작성과 실천을 두려워하면서 '체제전복음모'에 빌미를 준다는 매저키스트들의 부당한 준동으로 오히려 방귀뽀뽀를 화를 내는 격이 되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비리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금권과 비리, 탈법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미끼

정치비리 기화로 TK신수도 구상

로 결국은 민중들에게 정치적 무관심과 무기력만을 증폭시켜 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불신은 정치권의 회풍에 의해 과연 사회변혁의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정치문제를 살펴 본다면 우선 정권은 '비리'등 사건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돌릴 분위기를 터트림으로써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꼬리를 감추려는 술책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인가? 모 월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청와대 주변과 권력의 핵심에서 정치권부의 일맥을 유지하는 파소 집단의 야구가 아닌가. 민중들의 체제변혁적 요구와 정치적, 계급적 각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강력한 지배, 그렇지만 덜 강력한 이미지들을 풍기는 인물을 요구했고, 그것이 월계수회를 중심으로 한 신TK사단인 것이다. 이는 공안통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어달라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노정권의 방법이 더 고도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민중들은 어떠한가. 걸쭉한, 지자체, 각종연쇄비리사건으로 불만은 있으나 체계적인 인식과 조직적인 대응이 안된 상태에 서 공안정국과 '법치'의 전경에 대한 공포로 혼란과 무기력에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정권은 교활하게 자신의 위기를 넘기려 하고 민중들은 이것조차 간파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있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와 입장을 말할 수도 없이 지배권력의 논리로 '정치'는 도덕군자와 사기꾼간에 있는 그 무엇이 라고 주입당해야만 하는가. 때에 따라서는 정치는 술수요, 다음날 듣는 말로써만 먹치라는 이윤배반적인 논리라면 역사책이나 공자의 경구속에서 나오는 홍미거리로 머물수 밖에 없다.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말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의 현실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썩은 정치권들에게 강제로 위임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에서 출발해야 하며 또한 주어진대로 받아들이고, 마지못해 떨어진 개량에 만족하지 않으려는 모습속에서 가늠하지 않을까? 썩은 정치, 부패한 정치를 통째로 도려내는 데서 민중들은 자신의 건강한 현실을 회복할 것이다.

타도와 은폐의 결전장

현장취재

금호시장 앞 가두시위 현장

"가득차는 민생고에 재벌특혜 웬말이나. 부패정권 재벌정권 파쇼정권 타도하자" 정부와 재벌의 규탄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7일 금호시장 앞 가두투쟁속에 울려 퍼진 학생들의 외침은 현 정권과 정치권, 독점제도의 반 민중적 작태에 대한 단죄를 선포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6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금호시장 앞길에 결집한 2백여명의 학생들은 전투경

찰과 백골단 저지를 위해 바리케이트에 불을 붙이고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고 예전의 도시중심 가두전전전과는 달리 주변 시장상인과 철거촌 주민들을 향해 현 정권의 본질과 독점제도의 착취를 폭로했다. 수사사건을 이야기하고, 이를 규탄하는 집회나 시위를 열면 좌경, 용공이라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스스로 자신의 비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민중들의 자각에 의한 투쟁

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수서비리 진상규명, 규탄대회는 민중들과 함께 조직하고 연대투쟁 해야함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의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어지는 현실에 청년학생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민중과 함께 사회모순에 대한 변혁의 참가일 것이다.

(방한기記者)



아남이 드리는 입학예세지
축하합니다.
경희의 사자로 시작되는
새로운 캠퍼스 생활이 항상 신신히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남 제3도요음악강습회
아남오디오에서는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매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도요음악강습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587-0981 ~ 8 (교소8)

PM 10:00
PM 4:00
PM 1:00
AM 9:05
AM 7:30

델타로 떠나는 하루 여정

젊음을 위한 오디오 델타 500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
리포터다, 아르바이트다, 학원이다...
그래도 젊다는 것이 더없이 소중한.
하루를 마치고
델타 500과 함께 되새겨보는 그 시간들—
델타 500과 함께하는
나만의 여유가 새롭다.

'91년 인기모델

델타 500-오디오의 본고장 유럽진출 /
탄생과 동시에 단일모델로는 아남오디오의 최대출판인
40,000대 수출, 음악의 나라 독일에서 열광적 찬사 /

매혹적 다기능, 경제적인 가격 — ₩368,000

델타 500의 다채로운 첨단기능

- MEMORY기능과 방송선택기능을 갖춘 타이머겸용 디지털 신서사이저 튜너
- 테이프 자동속도 2배속 2개의 데코가 연속재생 가능한 더블캐세트 데코
- 신속기능과 반복기능을 갖춘 최첨단 CD 플레이어
- 32가지 기능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무선리모콘
- 신명나는 중·고음과 중후한 저음을 들려주는 노스코퍼레이션의 3WAY 스피커
- Noise Zero에 도전하는 돌비시스템
- AV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 연결장치
- 대용량, 박력충만의 컴팩트 스피커
- 정격출력 50W (25W x 2)의 펄스
- 오디오 조작의 묘미를 느끼게 하는 모노와이브 컨트롤
-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자동 튜닝기능
- 기호에 따라 음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픽 이퀄라이저

정직한 소리, 정직한 오디오

아남오디오

● 서울본사 522-3663 ● 인천본사 524-1321 ● 서울중점점 332-4351 ● 서울강남점 582-7058 ● 서울강북점 696-7774 ● 서울강릉점 925-2526, 3267 ● 인천 427-8910 ● 수원 44-7565 ● 대전 523-6768 ● 충청 32-3811
● 울산 433-5773 ● 대구 253-6832 ● 부산 533-6558 ● 평택 44-8078 ● 전주 46-9969 ● 광주 525-4832 ● 순천 744-2088 ● 전주 252-9515 ● 부산동부점 83-3396 ● 부산서부점 488-9870-1 ● 마산 95-6304